

第 60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 會 議 會 議 錄

( ' 96. 2. 9. )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會制國)會員委育場並非謝忠 同 06 錄

# 本會總會

(0 5 30')

會員委育場並非謝忠

# 목

# 차

1996 • 2 • 통권 제46호

|                                       |    |
|---------------------------------------|----|
| I. 제6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개회식 .....      | 3  |
| II. 제6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5  |
| III. 부 록                              |    |
| ▶ 의사일정(안) .....                       | 17 |
| ▶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19 |
| ▶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 .....       | 25 |
| ▶ '96.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 설명자료 .....   | 31 |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 37 |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6년 2월 9일 (금요일) 16시 03분

## 議事日程 (제60회 임시회 개회식)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교육위원 선서
4. 폐식

(사회: 의사과장 강인형)

(16시 03분 개식)

###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6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지난 1월 23일 충청북도의회에서 당선되신 김정길위원님의 교육위원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정길위원 발언대로 나옴)

### ● 김정길 위원

“선서,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2월 9일 충청북도교육위원 김정길.”

(김정길위원 자리로 돌아감)

**[제60회-개회식]**

● **의사과장 강인형**

다음은 2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하신  
집행부 간부직원의 인사소개가 있습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부교육감 김근학**

부교육감 김근학입니다.

지난 2월 7일자로 본청 시설과장으로 전  
보 발령된 박성근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박성근과장 앞으로 나와 인사)

박성근과장께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  
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2월 7일자로 본청으  
로 전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박성근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사과장 강인형**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6시 07분 폐식)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6년 2월 9일 (금요일) 16시 07분

## 議事日程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6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제6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6시 07분 개의)

### ● 의장 박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1. 경과보고

###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6년 2월 5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구

[제60회-제1차]

되어 같은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 96-2호로 긴급공고하였습니다.

다음,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하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같은날 집행청에 이송하였고, 그중 조례안 2건은 '96년 1월 24일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난 2월 2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 금회 처리안건입니다.

금회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조일환위원님 외 3인이 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제6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6시 09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6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2월 9일, 1일간으로 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과 조일환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을 처리하

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6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2월 9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10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중등교육국장 전태식입니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995년 1월 1일부터 청주시에 구가 설치되어 관할구역이 정해짐에 따라 공동실습소 설치학교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청주농업고등학교 위

치란중 “청주시”를 “청주시 상당구”로 하고,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위치란중 “청주시”를 “청주시 상당구”로, 충북공업고등학교 위치란중 “청주시”를 “청주시 흥덕구”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청주시구설치에 관한조례 제1,795호 1994년도 12월 30일에 근거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덧붙임 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 참조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중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4.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

(16시 12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인 가칭 용암여고 신설부지에 대한 토지취득의 건입니다.

용암여고 설립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번 제 59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며 취득 토지의 위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33번지 1필지로 도시계획상 학교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취득면적은 13,745.8평방미터, 평수로는 4,158평으로 토지매입비는 42억 5,357만원이며 평당가격은 102만 3천원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 참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 : 별첨3
- '96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 설명자료 : 별첨4  
(끝에 실음)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  
규칙안

(16시 14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일환위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으로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일환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조일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조일환 위원

먼저, 그 의안 제안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신용철위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데도 저희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일환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도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의회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회의규칙 일부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운영상 미비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정할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등록시 당선증서 제시 조건은 현행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이유에서 교육위원에게는 비현실적인 요건이므로 이것을 삭제할 것을 제의합니다.

새로 구성된 최초의 임시회의시 임시의석 결정방법의 하나로서 현행에 의석 배치와 같은 위원의 선출 지역순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회기와 회기의 연장을 공히 의결로 정하도록 하여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회기 연장시 연 5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은 임시회 최대 회기일수가 5일인 점을 감안할 때에 실효가 없는 것으로서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위원의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때에만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일부 자구수정과 문구의 삽입·수정 등의 사항으로 의안을 위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제4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안 관련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

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별첨5

(끝에 실음)

(조일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 들으신 각 안건들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심의안건인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도 교육위원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회의규칙이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으로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위원여러분 모두가 이미 개정안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질의·토론없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없으시죠?

(“의견있습니다.”하고 이기수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 의장 박재현

있습니까?

● 이기수 위원

예.

● 의장 박재현

그럼 질의.....

● 이기수 위원

여기 앉아서.....

● 의장 박재현

나오셔서 하실까요?

(이기수위원 발언대로 나눔)

● 이기수 위원

교육위원 이기수입니다.

지금 저 32조 개정에서 원안은 “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작성한다는 말하고 기재한다는 내용이 동일시 되는 내용 같습니다.

이것을 두번 사용해가지고서 작성하면 기재하는 내용까지 포함되는 애긴데, 그걸 굳이 원안대로 얘기했을 경우에 문맥이 매끄러운데 그걸 다시 작성을 하고 나서 또 기재한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오히려 문맥상 좀 번거로운 면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42조에 소위원회의 그 “소위원회위원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것을 굳이 아라비아숫자 1문1답으로 표현을 한 것은 오히려 보기에 덜 좋지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 42조도 원안대로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일환 위원

지금 첫번에 말씀하신 것이 몇 조죠?

● 이기수 위원

32조요.

● 조일환 위원

32조. 예, 기재

● 이기수 위원

회의록을 작성했으면 기재하는 내용이 함축된 애긴데, 거기다 다시 기재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표현한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오히려 번거로운 것 같이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원래의 내용을 “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간결하며 오히려 매끄러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또, 뭐. 설명 먼저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신용철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예, 나오셔서 하시죠, 거기서 하시죠. 불편하시니까.

● 신용철 위원

다리가 불편해서.

규칙 19조에서. 이 자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신용철입니다.

회의규칙 문제는 위원회의 기본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개정을 하는 이유가 불합리한 미비된 사항을 보완을 해서, 일단 취지

는 좋습니다.

타·도분도 대충 대조를 2,3일간 제가 해 봤습니다.

두가지는 지금 이기수위원이 이미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열가지 중에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임시회의 경우에는 의사국장이 위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지역, 선출지역순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임시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의장이 선출되면 당연히 지역순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위원성명의 가나다순 보다는 지역, 선출지역순으로 하는 것이 타도의 예를 보더라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두번째 것은 23조 1항, 발언시간에 위원 발언을 20분으로 이미 기본적으로 돼 있고,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은 10분으로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강조하는 “다만”이라는 말을 질의 앞에다 넣어서 “다만, 질의” 이렇게 해서 문맥이 꼭 매끄럽다고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강한 인상을 준다고 봐서 기존 있는 대로 “다만”을 빼고 그대로 하는 것이 좋

다고 생각을 합니다.

42조 2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전에 의장님께 저희 회의규칙 18조 1항 발언의 통지 및 허가, 또 19조 1항 발언의 장소에 대한 문제, 또 21조 1항 “의제외에 발언할 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협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난 12월 8일 제57회 본회의때 상정돼서 의사국 직제에 관한 의회 결정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한 6개월여 개원된지 경과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몸이 좀 아프긴 합니다만 자료를 좀 수집을 할래도 의안국에 손이 모자르고 또 그렇다고 할 적에 당시에 별정직과 일반직을 동시에 복수제로 두도록 돼 있던 것을 단일화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단일화 된 후보자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어느정도 협의가 됐으며, 또 지금 현재 어느정도 후임자 문제를 추진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하고 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조일환 위원

그 의장님, 저 지금 이기수위원님께서 일부.....

● 의장 박재현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또 질의하실, 전부 질의를 받고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안계십니

까?

(모두 침묵)

그럼 이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하시겠어요?

● 조일환 위원

예. 저희가 이게 뭐 좀 작은 일이고 어떻게 보며는 우리가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위원이 당선이 되며는, 예를 들며는 당선증이 있고 예를 들며는. 그 당선증을 제시를 하고 등록을 한다. 이제 그런 것은 저희들은 또 선거지 중에서도 일반 광역이나 기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손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정도 자구수정이면 되겠다. 요 사항은 의사국 실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실제 그 모순이 되는 게 없느냐, 이렇게 해서 평소애 생각했던 것을 몇자 자구수정, 애매한 것을. 아니면 통일, 이런 것에서 이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조에 작성을 기재하고 바꾸느냐, 사실은 미미하고 우리나라 단어 어휘상 작성해도 작성해서 기재한다. 기재나 작성이나 효력이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다른 데를 제가 집에서 읽어 보면 47조 같은 데는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32조는 작성한다. 이게 똑같은 행위인데 이렇게 해서 저는 통일을 하자, 통일하자. 문구를 통일하지. 그 다음에 일문일답, 이거는 우리나라 한글로 표기하면 하나

라는 말, 하나. 이런 말인데 일문일답하면 하나라는 뜻이 수적인 개념이니까 아주 이 안에 1문1답으로 고치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법제처나 일반 이러한 법전에도 보며는 일문일답 그러면 대부분에 통상적으로 아라비아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통상이다. 그래서 조그만 일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손질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재현

예, 신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여길 하나를 매듭짓고 넘어 갈까요?

이따 또 보충질의가 있으면은 우선 답변을 드리고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신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누가 답변하겠어요?

( 장내 소란 )

● 조일환 위원

지금 그 주요 개정내용 검토자료는 이제 첨부물로다가 거기 첨부해 드렸습니다.

저도 조금 읽어 봤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에는 그 당선증서를 의사국에, 그 다음에 2번에 보며는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 이런 것은 마 이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발의를 한 것이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의 검토자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재현

지금 질의내용이 작성, 기재 내용이 같은.....

(청불)

이해가 된 것이고요. 또 그 밑에.....

● 이기수 위원

아니 부의장님, 어떻게 마이크 성능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확실히 들리지는 않았어요. 먼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기재. 기재부분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작성이나 기재나 이런 말씀을 말씀하셨죠?

● 이기수 위원

예 예

● 조일환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47조에 보시면 저희 소위원회 회의록, 그것도 기재나 작성이나 하는 말이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또 이쪽 것은 작성한다. 이렇게 통일성을 기한다. 이런 뜻에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일문일답 내용은 대개 그 법전이나 규칙에 보면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그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통상이다. 이런 뜻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의장 박재현

이해가 되셨어요 이위원님?

● 이기수 위원

예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신위원님에 대한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다만.

(“다만이라는 용어 들어간거”하고 김광수위원 말함)

용어.

● 신용철 위원

선출지역순하고.....

● 조일환 위원

다시한번 질의하시죠?

● 의장 박재현

23조 1항, 다만 삭제의 건.

● 조일환 위원

지금 그 주요개정 검토자료를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제2항에서 제2항 “최초의 임시회의 시 임시회의석 결정방법확대” 이걸 질문하신 거죠?

맞습니까? 신위원님께서.

● 의장 박재현

문구중에 다만이라는 말.....

● 조일환 위원

지금 신용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 신용철 위원

3항에 “위원회 의석은 의장이 정한다. 다만, 위원의 최초의 임시회의 경우에는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선출지역순” 이렇게 이원화 시켰는데 저는 단일화해야 좋겠다 하는 애깁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그것은 제가 이런 뜻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위원의 성명의 가나다순,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임사회 할 때에 어떤 원칙이 정해지지 않을 때 마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선출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 보편은 지역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이경윤위원님같은 경우는 어떤 발언하더라도 맨 마지막이다. 또 이런 그 불리한 이런 이익도 본의아니게 당할 수도 있고 해서 좀 문호를 개방해보자 하는 뜻에서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를 조금 범위를 확대한 그런 뜻입니다.

● 신용철 위원

수용하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선 선출지역순으로 해서 의장이 결정되면은 나머지는 큰 변동이 없이 똑같다 하는 것이 제 뜻이고.....

●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됐으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철 위원

“다만”이라는 용어를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굳이 거기다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신위원님께서 “다만”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은 것을 삭제해 달라. 이런 뜻이죠?

● 신용철 위원

예. 강조를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에 지난번 제57회 임사회에서 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의 개정안에서 단일안으로 결정된 별정직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재현

그 문제 고대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후임자 선정관계는 이 내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따 사적으로 말씀드리죠.

● 신용철 위원

예

● 의장 박재현

이 질의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해 줘야지 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면 뭣합니다.

또 뭐 딴 질의하실, 그럼 어떠.....

“다만”이라고 하는 어구삭제를 요구한 데 대해서 뭐 수용해 주시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꼭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내용이 뭐 규정을 존치시켜도 뭐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장내소란 )

뭐 그냥 원안대로 할까요?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 감사합니다.

별도의 질의·토론 없이 그럼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  
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본회  
의 산회와 아울러 제60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0분 폐회)

6. 회의록 서명위원

(16시 39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  
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동기, 이기수  
두분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0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박동기, 이  
기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  
다.

기타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60회-제1차]

○ 출석위원 : 11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운.

○ 출석공무원 : 17명

|               |             |              |
|---------------|-------------|--------------|
| 부교육감 김근학,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 중등교육국장 전태식,  |
| 관리국장 신재철,     | 공보담당관 정금옥,  |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
| 행정관리담당관 김진성,  |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
| 중등장학과장 한현구,   |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
|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 총무과장 고일영,   | 행정과장 이상찬,    |
| 재무과장 이기수,     | 시설과장 박성근.   |              |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2
- ▶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 : 별첨3
- ▶ '96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 설명자료 : 별첨4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별첨5

(별첨1)

## 議 事 日 程(案)

第60回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96.2.9(1일간)

| 일 시                 | 부 의 안 건  | 비 고 |
|---------------------|--|-----|
| '96.2.9(금)<br>15:00 | <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 협의회(교육위원실)   |     |
| 16:00               | <input type="checkbox"/> 개회식<br><br>[제1차 본회의 개의]<br><br>1. 제6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br>·회기 : 1996. 2. 9(1일간)<br>2.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br>조례안<br>3.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br>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br><br>※ 폐 회 |     |



(별첨2)

|             |                    |
|-------------|--------------------|
| 의안번호        | 제 60-1 호           |
| 의결<br>년 월 일 | 1996.<br>( 제 . 회 ) |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출년월일 | 1996. 2 . 5 |

법무담당부서 심사필

#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1

제출년월일 : 1996. 2 . 5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개정사유

'95. 1. 1.부터 청주시에 구가 설치되어 관할구역이 정해짐에 따라 공동실습소 설치학교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청주농업고등학교 위치란중 "청주시"를 "청주시 상당구"로 하고,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의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위치란중 "청주시"를 "청주시 상당구"로, 충북공업고등학교 위치란중 "청주시"를 "청주시 흥덕구"로 변경함 (안 제2조관련 별표).

## □ 개정근거

- 청주시구설치에관한조례 (청주시 조례 제1,795호, 1994. 12. 30.).

□ 조례안 : 덧붙임

## □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청주농업고등학교의 위치란중 "청주시"를 "청주시 상당구"로,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의 위치란중 "청주시"를 "청주시 상당구"로, 충북공업고등학교의 위치란중 "청주시"를 "청주시 흥덕구"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청주시구설치에관한조례 (청주시조례 제1,795호)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p>제1조(목적) (생략)<br/>제2조(위치)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br/>제3조~제10조 (생략)</p> <p><b>【별 표】</b><br/>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p>   |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br/>제2조(위치) .....<br/>제3조~제10조 (현행과 같음)</p> <p><b>【별 표】</b><br/>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p>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명 칭</th> <th style="width: 20%;">설치학교</th> <th style="width: 60%;">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br/>농업계고등학교<br/>공동실습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청주농업고등학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 청주시<br/>내덕 1동 322</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br/>공업계고등학교<br/>공동실습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 청주시<br/>영동 7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충북공업고등학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 청주시<br/>가경동 666</td> </tr> </tbody> </table> | 명 칭  | 설치학교                      | 위 치 | 충청북도<br>농업계고등학교<br>공동실습소 | 청주농업고등학교 | 충청북도 청주시<br>내덕 1동 322 | 충청북도<br>공업계고등학교<br>공동실습소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 충청북도 청주시<br>영동 79 | 충북공업고등학교 | 충청북도 청주시<br>가경동 666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명 칭</th> <th style="width: 20%;">설치학교</th> <th style="width: 60%;">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br/>같 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br/>같 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 청주시<br/>상당구 내덕 1동 32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 청주시<br/>상당구 영동 79</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 청주시<br/>흥덕구 가경동 666</td> </tr> </tbody> </table> | 명 칭 | 설치학교 | 위 치 | 현행과<br>같 음 | 현행과<br>같 음 | 충청북도 청주시<br>상당구 내덕 1동 322 | . | . | 충청북도 청주시<br>상당구 영동 79 | . | . | 충청북도 청주시<br>흥덕구 가경동 666 |
| 명 칭   | 설치학교   | 위 치                       |     |                          |          |                       |                          |            |                   |          |                     |   |     |      |     |            |            |                           |   |   |                       |   |   |                         |
| 충청북도<br>농업계고등학교<br>공동실습소  | 청주농업고등학교   | 충청북도 청주시<br>내덕 1동 322     |     |                          |          |                       |                          |            |                   |          |                     |   |     |      |     |            |            |                           |   |   |                       |   |   |                         |
| 충청북도<br>공업계고등학교<br>공동실습소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 충청북도 청주시<br>영동 79         |     |                          |          |                       |                          |            |                   |          |                     |   |     |      |     |            |            |                           |   |   |                       |   |   |                         |
|   | 충북공업고등학교   | 충청북도 청주시<br>가경동 666       |     |                          |          |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설치학교   | 위 치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br>같 음  | 현행과<br>같 음   | 충청북도 청주시<br>상당구 내덕 1동 3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청북도 청주시<br>상당구 영동 7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청북도 청주시<br>흥덕구 가경동 666   |     |                          |          |                       |                          |            |                   |          |                     |   |     |      |     |            |            |                           |   |   |                       |   |   |                         |
|   |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법령 발췌서

## □ 청주시구설치에관한조례 (청주시조례 제1,795호)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청주시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 구의명칭  | 관 할 구 역 (법정동)   |
|-------|---|
| 상 당 구 | <p>영동, 북문로1가동, 북문로2가동, 북문로3가동, 남문로1가동, 남문로2가동, 문화동, 서운동, 서문동, 남주동, 석교동, 수동, 우암동, 내덕동, <u>울랑동</u>, 사천동, 탑동, 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동, 명암동, 산성동, 용암동, 용정동, 방서동, 평촌동, 지북동, 운동동, 월오동, 주성동, 주중동, 정상동, 정하동, 정북동, 오동동, 외남동, 외평동, 외하동</p>         |
| 흥 덕 구 | <p>사직동, 사창동, 모충동, 운천동, 신봉동, 산남동, 미평동, 분평동, 수곡동, 성화동, 개신동, 죽림동, <u>가경동</u>, 복대동, 봉명동, 송정동, 강서동, 석곡동, 휴암동, 신전동, 현암동, 동막동, 수의동, 지동동, 서촌동, 신성동, 평동, 신대동, 남촌동, 내곡동, 상신동, 원평동, 문암동, 송절동, 화계동, 외북동, 향정동, 비하동, 석소동, 정봉동, 신촌동, 장성동, 자암동.</p> |

(붙임3)

|           |                       |
|-----------|-----------------------|
| 의안번호      | 제 60-2호               |
| 의결<br>년월일 | 1996. 2. 회<br>( 제 회 ) |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       |             |
|-------|-------------|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출년월일 | 1996. 2. 5. |

# '96.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           |      |
|-----------|------|
| 의 안<br>번호 | 60-2 |
|-----------|------|

제출년월일 : 1996. 2. 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 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대상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내 역

(단위:㎡/천원)

| 구 분   | 당 초 |     | 변 경      |           | 증 (△)감   |           | 비 고 |
|-------|-----|-----|----------|-----------|----------|-----------|-----|
|       | 면 적 | 금 액 | 면 적      | 금 액       | 면 적      | 금 액       |     |
| 토지 취득 | 0   | 0   | 13,745.8 | 4,253,570 | 13,745.8 | 4,253,570 |     |
| 계     | 0   | 0   | 13,745.8 | 4,253,570 | 13,745.8 | 4,253,570 |     |

'96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내역

| 시·군<br>본 청 | 구 분<br>취 득 | 재산별<br>토 지 | 기 관 명<br>(가칭)용암여고 | 사 업 명<br>학교 신설 | 면 적(㎡)<br>13,745.8 | 금액(천원)<br>4,253,570 | 사 유<br>97.3.1.자 개 교 예정 | 비 고<br>별책실명자료<br>참조 |
|------------|------------|------------|-------------------|----------------|--------------------|---------------------|------------------------|---------------------|
| 계          |            |            |                   | 1 건.           | 13,745.8           | 4,253,570           |                        |                     |

제안 근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96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 내역 : 덧붙임

관계법령 별첨서 : 덧붙임

## 관계법령 (부분) 발췌서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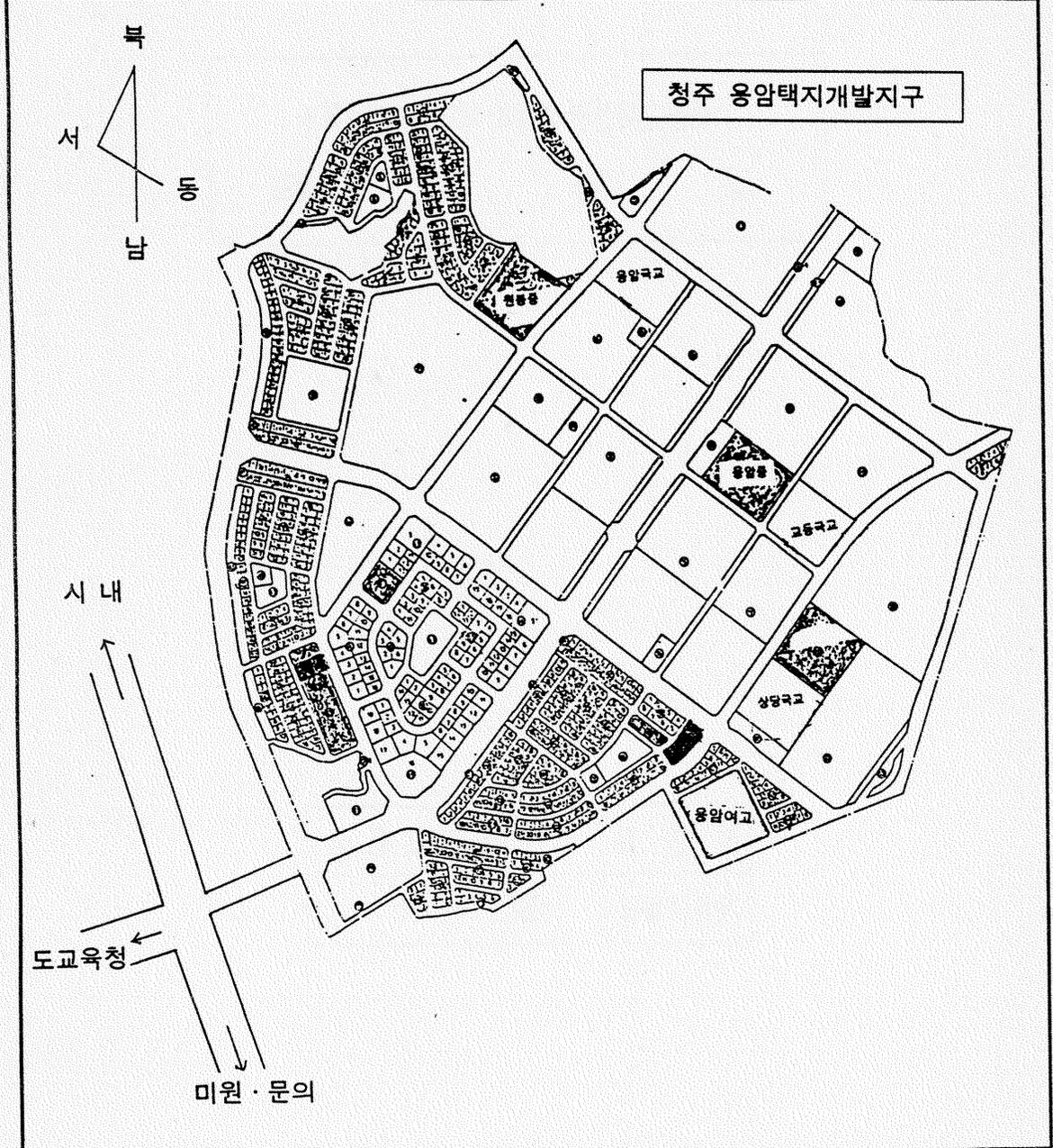
(별첨4)

'96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변경계획안  
설 명 자 료

|       |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출년월일 | 1996. 2. 4. |

## 용암여고(가칭) 토지 취득 위치도

| 용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br>(㎡) | 취득금액<br>(천원) | 비고             |
|------|---------------|------|----|-----------|--------------|----------------|
| 학교부지 | 충주시상당구<br>용암동 | 2033 | 학  | 13,745.8  | 4,253,570    | '97.3.1. 개교 예정 |



|      |                       |    |    |
|------|-----------------------|----|----|
| 고유번호 | 4311112400-12033-0000 |    |    |
| 토지소재 | 충청북도 청주세성구 흥남동        |    |    |
| 지번   | 2033                  | 축적 | 수치 |

## 토 지 대 장

|      |     |      |                |
|------|-----|------|----------------|
| 도면번호 | 55  | 발급번호 | 960117-0076-02 |
| 장번호  | 1-1 | 처리시각 | 14 시 17 분 11 초 |
| 비고   |     | 작성자  | 정복산            |

| 토 지 표 시   |                                      | 소 유 권   |         |
|---|--------------------------------------|---------|---------|
| 지목  | 면적(m <sup>2</sup> )                  | 사유      | 유권      |
| (10) 학교용지   | *13745.8 (62)1995년 9월 14일<br>구북경리 원로 | 이 하 여 배 | 이 하 여 배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400원<br/> <small>충청북도 청주시 흥남1동 2033번지</small> </div> |                                      |         |         |
| 등기수정년월일   |                                      |         |         |
| 토지대금(기준수취원금)  |                                      |         |         |

| 소 유 권                    |  |
|--------------------------|--|
| 변동원인                     | 주 소  |
| 1995년 9월 14일<br>(08)부처   | 서울특별시청남구청상동 164<br>한국저거합공사<br>114271-0001818 |
| 1995년 9월 16일<br>(09)추적등기 | 서울특별시청남구청상동 164<br>한국저거합공사<br>114271-0001818 |

토 지 대 장 에 의 하 여 작 성 한 등 본 인 니 다.

1996 년 1 월



**청 주 시 상 당 구**

(수입증지가 인형(철부)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 수입증지가 철부 소외되지 아니한 등본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신청사항   | <b>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b>   |                 |               |  | 처리기간                                  |      |
| 1.②.3.4.<br>5.6.7  |  |                 |               |  | 1 일                                   |      |
| ※ 굵은 선안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br>※ 신청사항란은 아래의 1~7항목을 참조하여 표시하십시오.                |  |                 |               |  |                                       |      |
| 신청인  | 성명   | 이종복             | 주소            | 근교구청 재무리   |                                       |      |
| 대상지  | 토지소재지  |                 | 지번            | 지목   | 지적(㎡)                                 |      |
|  | 시  | 동               |               |  |                                       |      |
|  | 청주   | 용암동             | 2033          | 락  | 1374.5.0                              |      |
| 화인   | 1  | 국토이용            | 용도지역          | (도시·취락·경지·산림보전·공업·자연환경보전·관광휴양·수산자원보전·개발촉진)지역                           |                                       |      |
|  |  |                 | 용도지구          |  |                                       |      |
|  |  |                 |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   |  |                                       |      |
|  |  |                 |               | 토지거래   | (규제·신고)구역                             | 해당없음 |
|  | 2  | 도시계획            | 용도지역          | (전용· <del>중심</del> ·준주거지역)(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전용·일반·준)공업지역(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                                       |      |
|  |  |                 | 용도지구          | 풍치·주차장정비·아파트·고도(최저·6m이상·9m이상)(방화지구·집단방화지구)·기타 <b>주차장정비지구지정입안추진중</b>    |                                       |      |
|  |  |                 | 도시계획시설        | <del>저축</del> · <del>공원</del> ·공원·유원지·시설녹지·기타( )                       |                                       |      |
|  |  |                 | 도시개발사업        | 토지구획정리·일단의(주책지·공업용지) 조성·재개발·시가지조성                                      |                                       |      |
|  |  |                 | 구역            | 개발제한구역(내·저축)   | 기타( )                                 |      |
|  |  |                 | 도시계획입안사항      |  |                                       |      |
|  | 3  | 군사시설            | 군사시설보호구역      | 해당없음   |                                       |      |
|  | 4  | 농지              | 농업진흥구역·공원보호구역 | 해당없음   |                                       |      |
| 5  | 산  | <del>보전산지</del> | 해당없음          |  |                                       |      |
| 6  | 자연공원   |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 해당없음          |  |                                       |      |
| 7  | 수도   | 상수원보호구역         | 해당없음          |  |                                       |      |
| 기  | 기타 <b>700원</b> <b>청부한 토지계획도면은 참고용이며 적용도로 사용할수 없습니</b><br>타용도로 사용합수 <b>지적도시매물</b> |                 |               |  |                                       |      |
| 귀하의 신청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br>1996년 1월 1일                     |  |                 |               |  | 수수료                                   |      |
| 청주 <b>137</b> <b>상당구청장</b><br>(수입증지가 인영(첨부)되지 아니한 증여는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  |                 |               |  | 뒷면참조<br>210mm × 297mm<br>(신문용지 54g/㎡) |      |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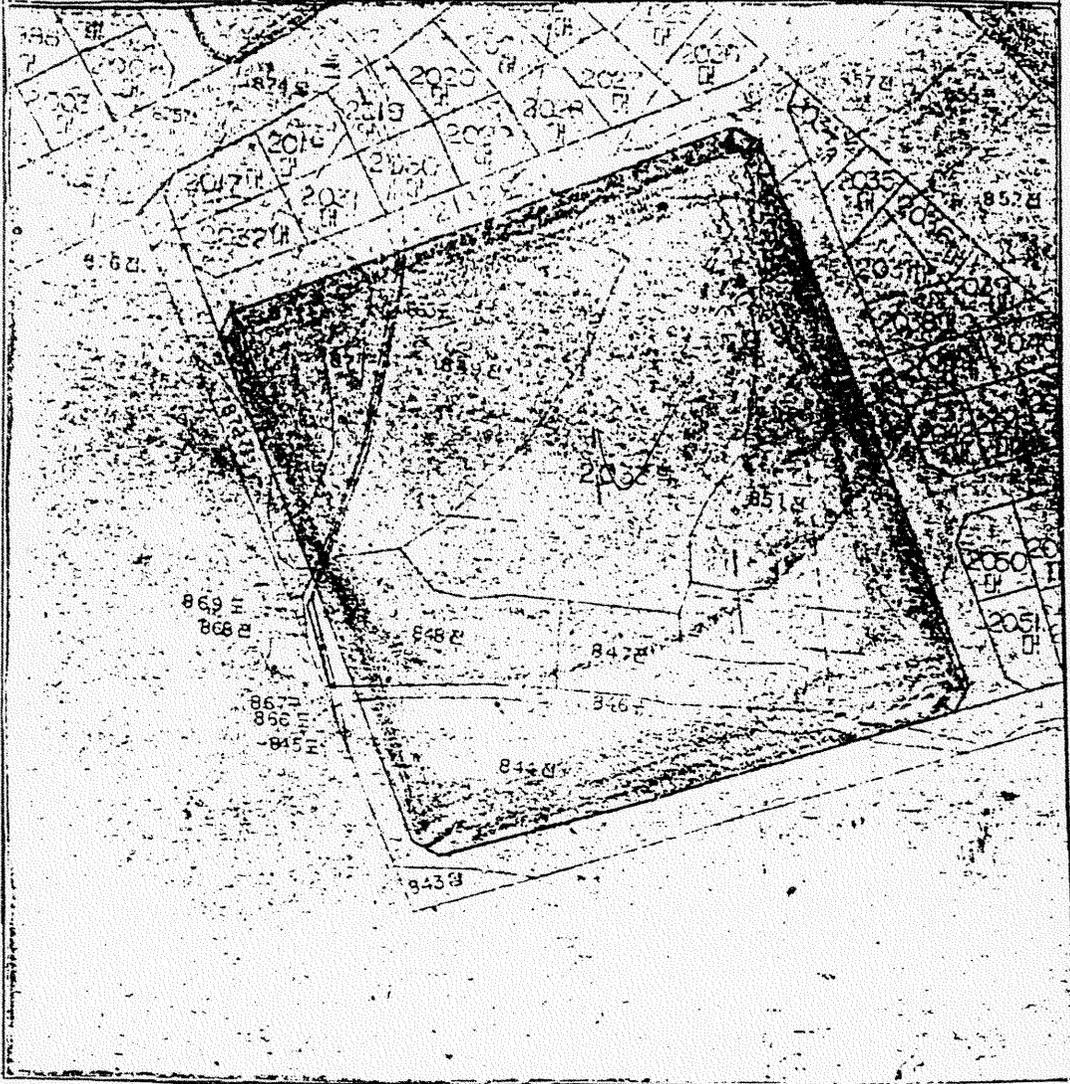
가. 이 확인서는 1필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사항입니다.

나. 부동산의 근본적인 재산가치에 영향이 미치는 각종 개별법상의 주요 제한사항을 망라하였으나, 3면 기재사항이 모든 법규를 수용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이용계획확인도면은 원칙적으로 생략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확인 도면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라. 1의 국토이용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300원, 2의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700원, 3내지 7의 사항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200원의 수입증지급 붙이시고, 붙이상의 경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의 각 수수료에 합산한 금액에 해당되는 수입증지급 붙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확인도면> 중첩 20부의 1 도시계획도면





(별첨5)

|             |                |
|-------------|----------------|
| 의안번호        | 제 60-3 호       |
| 의결<br>년 월 일 | 1996.<br>(제 회)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               |
|-------|---------------|
| 발 의 자 | 조 일 환 위원외 3 인 |
| 발의년월일 | 1996. 2. 5.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      |
|----------|------|
| 의안<br>번호 | 60-3 |
|----------|------|

발의년월일 : 1996. 2. 5.  
발 의 자 : 조일환 위원외 3인

## 제안사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회의규칙의 일부내용이 불합리하고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교육위원 등록시 당선증서 제시요건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삭제함(안 제2조 제1항).
- 새로 구성된 최초의 임시회시 임시의석 결정 방법의 하나로 위원의 선출 지역 순을 추가함(안 제2조 제3항).
- 회기와 회기의 연장을 공히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회기의 연장에 있어 중전의 "연5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 제4항)
- 위원이 의석에서 발언하도록 된 것을 발언대에서 발언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때에만 의석에서 발언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항).
- 기타 자구수정·문구일부 삽입·삭제·수정 등(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23조, 안 제32조, 안 제42조, 안 제44조).

## 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 규칙안 : 덧붙임.

## 참고사항 : 덧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현행)
- 주요개정내용 검토자료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당선증서를 의사국장에게 제시하고”를 “위원회 의사국에”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을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선출지역순”으로 한다.

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제4항 중 “위원장”을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한다. 다만,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제1항 중 “질의” 앞에 “다만,”을 삽입한다.

제32조 제1항 중 “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로 한다.

제42조 제2항 중 “일문일답”을 “1문1답”으로 한다.

제44조 제1항 중 “개의”를 “개회”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 행   | 개   | 정(안)  |
|--|---|---|---|
| 제1조(목적) (생략)   | 제2조(등록등) ①교육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u>당선증서를 의사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한다.</u>  |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 제2조(등록등)①-----<br>----- <u>위원회 의사국에</u> -----<br>-----<br>②(현행과 같음)<br>③-----<br>-----<br>----- <u>위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선출지역순</u> ----- |
| ②(생략)  | ③위원의 의석은 의장이 정한다. 다만, 위원<br>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최초의 임<br>시회의 경우에는 의사국장이 <u>위원 성명의 가<br/>나다순에 따라</u> 임시로 정한다. | 제3조(선서) (현행과 같음)  | 제3조(선서) (현행과 같음)  |
| 제3조(선서) (생략)   | 제4조(회기) ①-③(생략)   | 제4조(회기)①-③(현행과 같음)  | 제4조(회기)①-③(현행과 같음)  |
| ④회기의 연장은 의결로써 이를 정하되, 연 5<br>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⑤-⑥(생략)   | ④위원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이<br>를 연장할 수 있다.   | ⑤-⑥ (현행과 같음)  |
| 제5조-제12조(생략)   | 제13조(의안의 동의등) ①-③(생략)   | 제5조-제12조(현행과 같음)  | 제13조(의안의 동의등) ①-③(현행과 같음)   |
|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의하는 동<br>안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br>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받은 때에<br>는 즉시 이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br>다.   | 제14조-제15조(생략)   | ④-----<br>-----<br>----- <u>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u><br><u>이라 한다)</u> 은-----<br>-----              | 제14조-제15조(현행과 같음)   |
| 제16조(안전심의) ①위원회는 안전을 심의함에<br>있어서 제안자의 제안취지 또는 그 안전을 심<br>사한 <u>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br/>다)</u> 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br>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전<br>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br>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6조(안전심의) ①(생략)  | 제16조(안전심의) ①-----<br>-----<br>----- <u>위원장</u> -----<br>-----<br>-----<br>-----<br>②-④ (현행과 같음) | 제16조(안전심의) ①-----<br>-----<br>-----<br>-----<br>-----<br>-----<br>-----<br>-----<br>②-④ (현행과 같음)                                  |
| ②-④(생략)  | 제17조-제18조(생략)   | 제17조-제18조(현행과 같음)   | 제17조-제18조(현행과 같음)   |

| 현행  | 개정(안)  |
|---|--|
| <p>제19조(발언의 장소) ①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p> <p>②(생략)</p>  | <p>제19조(발언의 장소) ①위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한다. 다만,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p> <p>②(현행과 같음)</p>  |
| <p>제20조-제22조(생략)</p>  | <p>제20조-제22조(현행과 같음)</p>   |
| <p>제23조(발언시간등) ①위원의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생략)</p> | <p>제23조(발언시간등)①-----<br/>-----<u>다만, 질의.</u>-----<br/>-----<br/>②(현행과 같음)</p>                  |
| <p>제24조-제31조(생략)</p>  | <p>제24조-제31조(현행과 같음)</p>   |
| <p>제32조(회의록의 작성) ①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u>회의록을 작성한다.</u></p> <p>1-14.(생략)</p> <p>②(생략)</p>               | <p>제32조(회의록의 작성) ①위원회는 <u>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u></p> <p>1.-14.(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
| <p>제33조-제41조(생략)</p>  | <p>제33조-제41조(현행과 같음)</p>   |
| <p>제42조(소위원회 위원의 발언) ①(생략)</p> <p>②소위원회위원은 <u>일문일답</u>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p>                      | <p>제42조(소위원회 위원의 발언) ①(현행과 같음)</p> <p>②-----<u>1문1답</u>-----<br/>-----</p>                     |
| <p>제43조(발언청취 및 방청) (생략)</p>   | <p>제43조(발언청취 및 방청) (현행과 같음)</p>  |
| <p>제44조(의사·의결정족수) ①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생략)</p>  | <p>제44조(의사·의결정족수) ①-----<br/>-----<u>개회</u>-----<br/>-----<br/>②(현행과 같음)</p>                   |
| <p>제45조-제69조(생략)</p>  | <p>제45조-제69조(현행과 같음)</p> <p><u>부칙</u></p> <p><u>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95. 7. 26. : 법률 제4951호)

## 제15조(회의) ①-②(생략)

③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는 년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안에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④교육위원회의 개최·휴회·폐회·회기 기타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 1 장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1991. 9. 3) 규칙 제 2호

개정 1992. 5. 2 규칙 제 5호

개정 1993. 2. 20 규칙 제 7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등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전문성 및 능률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등록등) ①교육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사국장에 게 제시하고 등록한다.

②위원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③위원의 의석은 의장이 정한다. 다만, 위원 임기만료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최초의 임시회의 경우에는 의사국장이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 3 조 (선서) 위원은 임기초에 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우리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 2 장 회 의

### 제1절 회의의 개폐

제 4 조 (회기) ①위원회의 회의는 년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안에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0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③정기회의 회기는 20일, 임시회의 회기는 5일 이내로 한다.

④회기의 연장은 의결로써 이를 정하되, 연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한다.

⑥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 5 조 (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①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의장이 정한다.

②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③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 제 1 장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의장이 학생의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 (휴회) ①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휴회중인 경우 교육감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 7 조 (결석)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 2 절 의 사 일 정

제 8 조 (의사일정의 작성과 변경등) ①의장은 개의일시·장소·부의 안전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용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용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전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써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③의장은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만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 9 조 (의사일정의 조정)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전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 제 3 절 의 안 및 동 의

제 10 조 (의안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교육감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 11 조 (의안의 부의 또는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위원회에 보고·부의한다.

②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12 조 (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전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은 안전·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의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전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 13 조 (의안의 동의등) ① 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의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②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위원 3인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찬성없이 이를 의제로 한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14 조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 ① 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의를 한 자가 각각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가 제출한 의안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5 조 (번안) 번안동의를 위원회에 있어서는 이를 발의한 위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소위원회에 있어서는 이를 발의한 위원의 1인의 동의로써 각각 이를 행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안전이 교육감에게 이송된 때, 소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 16 조 (안전심의) ① 위원회는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취지 또는 그 안전을 심사한 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전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이를 소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교육감일 경우 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1 장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 17 조 (의안의 정리) 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절 발 언

제 18 조 (발언의 통지 및 허가)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는다. 이 경우 질의에 있어서는 그 요지를, 토론에 있어서는 반대 또는 찬성의 의사를 기재한다.

② 발언통지문을 하지 아니한 위원은 통지문을 한 위원의 발언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문을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19 조 (발언의 장소) ① 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 하도록 할 수 있다.

제 20 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1 조 (의제의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 22 조 (발언회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3 조 (발언시간등) ① 위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 24 조 (보충발언)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

## 제1장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 25 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 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전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 26 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위원 2인이상의 발언이 끝난후에는 발언예정자가 있다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결로써 질의나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 5 절 표 결

제 27 조 (표결의 선포등) ① 의장은 표결할 안전의 제목을 선포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전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 28 조 (표결방법) ① 의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④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9 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위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후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의장은 위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으로 하여금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행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 30 조 (수정안의 표결순서등)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개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

제1장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 부터 먼저 표결한다.
-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 31 조 (표결결과와 선포) 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 32 조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최·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 5. 출석공무원의 직·성명
- 6. 위원의 이동 또는 의석의 배정·변동
- 7. 제반보고사항
-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 및 그 이송 또는 철회에 관한 사항
-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 10. 의사
- 11.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 13. 위원의 발언보충서
-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한다.

제 33 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위원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위원 및 의사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이 경우 선출된 위원은 당해 회기의 회의록에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 34 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위원·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 제 1 장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전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 35 조 (회의록의 배부·공개) ①회의록은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경우와 학생교육 또는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의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그 배부·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⑤회의록의 발간과 배포방법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3 장 소위원회

제 36 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전과 심사기일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경우 의장은 소위원회가 그 기간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안전을 바로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조례심사소위원회
2. 청원심사소위원회
3.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4. 예산·결산소위원회
5. 감사소위원회
6. 조사소위원회

④제3항 각호의 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이 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되, 그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활동을 종료한다. 이 경우 심사중인 안전에 대하여는 의장이 위원회에 부의한다.

## 제 1 장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 37 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된 소위원회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감사·조사소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감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은 그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8 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감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39 조 (위원회의 회의중 소위원회 개회)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 40 조 (동의) 소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의 1인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 41 조 (소위원회의 심사) ① 소위원회는 안전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및 속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속조심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그 심사하는 안전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교육감일 경우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명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 42 조 (소위원회위원의 발언) ① 소위원회위원은 소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회수·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방법을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위원회위원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 43 조 (발언 청구 및 방청) ① 의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전에 관하여 소위원회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44 조 (의사·의결정족수) 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 1 장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 45 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소위원회가 안전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2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6 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의 회의에서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 47 조 (소위원회 회의록) 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소위원회위원 아닌 위원외의 성명

5. 출석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전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소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위원회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전명과 그 내용

11. 기타 소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의 발언 내용은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날인 한다.

## 제 4 장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또는 심사

제 48 조 (예산안의 심의 또는 심사) ① 위원회는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제3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한다.

## 제 1 장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③의장은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한다.

제 49 조 (예산안의 수정 동의)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 50 조 (예산안의 의결) ①위원회에서 직접 예산안을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 각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②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안을 위원회에 부의하여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 51 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를 하거나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52 조 (결산의 심의 또는 심사) 결산의 심사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5 장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 53 조 (교육감등의 출석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 54 조 (교육감에 대한 서면 질문) ①위원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의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55 조 (교육감등의 출석·발언)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6 장 사직 및 징계·자격심사

제 56 조 (위원의 사직) ①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 57 조 (징계·자격심사의 청구등) ① 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징계를 청구하는 때에는 위원 3인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법 제24조(지방자치법 제78조 준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이를 행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징계청구요지서를 배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중 징계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기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 또는 자격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징계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자인 피심위원의 출석·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징계 또는 자격심사청구서를 위원회 또는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 58 조 (답변서의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또는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기한을 정하여 다시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위원회의

제 1 장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 59 조 (심문과 발언) ① 위원회 또는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의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의장인 경우에는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②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위원회 또는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 60 조 (징계의 의결)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었거나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한다.

② 피심위원은 자신의 징계에 관한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 61 조 (자격상실의 의결) ① 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 7 장 질 서

제 62 조 (경호) ① 의장은 위원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 63 조 (위원의 질서유지 의무등) ① 위원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녹화 및 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6. 폭력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 제 1 장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 64 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의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위원의 찬성없이 모욕을 당한 위원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 65 조 (의장의 제지등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위원) 회의장에서 의장의 경고·제지 또는 발언취소등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징계에 부의할 수 있다.

제 66 조 (방청인 준수사항등) ① 회의장에는 위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음주를 한 자
3. 정신이상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허가없이 입장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7.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 67 조 (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사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 제 1 장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③의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는 1회기 동안 통용할 수 있는 방청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⑤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68 조 (녹음·녹화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또는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는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직원은 기록보존등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다.

### 보 칙

제 69 조 (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 부 칙(1991. 9. 3. 제2호)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1973년 1월 25일, 교육규칙 제45호)은 이를 폐지한다.

### 부 칙(1992. 5. 2. 제 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3. 2. 20. 제 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요개정내용 검토자료

## 1. 교육위원의 등록요건(안 제2조 제1항)

- 현행 :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사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한다.
- 개정(안) : 임기초에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등록한다.
- 사유 : 현행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적용 대상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경우 당선자 결정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이 교부되며 교육위원은 동법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당선증 교부 불가함.

※ 관련 참고법령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조 및 제187조 내지 제191조)

## 2. 최초 임시회시 임시의석결정 방법 확대(안 제2조 제3항)

- 현행 :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
- 개정(안) :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선출지역순
- 사유 : 현의석배치 방법 추가로 신속적 운영도모

※ 도의회 : 지역 선거구 순서에 의함.

## 3. 회기 및 회기의 연장(안 제4조 제4항)

- 현행 : 회기의 연장은 의결로써 이를 정하되, 연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안) : 위원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사유 : 회기와 회기의 연장을 공히 의결로 정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회기연장시 “연 5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임시회기 최대 일수가 5일인 점을 감안할 때 실효가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함.

※ 관련 참고규정

| 국 회 법                                     | 충청북도의회의회의규칙                                |
|---|--|
|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

4. 발언의 장소(안 제19조 제1항)

- 현행 : 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 개정(안) : 위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한다. 다만,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 사유 : 본회의장의 위원 발언은 발언대에서 함이 원칙임.

※ 관련 참고규정

| 충청북도의회의회의규칙  | 서울시교위회의규칙   |
|--|---|
|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 위원은 등단하여 발언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